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체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전담인력 운용을 의무화하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 농식품부는 신규법인의 공모 절차, 재지정 조건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경쟁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매 시장 유통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211)
		담당자	사무관	김준현 (044-201-2221)

구분		현행	개정안
도매시장법 인의 지정관련 (안 제23조)	공모지정	< 신설 >	■ 지정 시 공모 절차 운영
	재지정		■ 지정 기간 만료 법인의 재지정 근거 규정 마련 ■ 재지정기간:3년~5년
	(재)지정 조건		■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권익 보호,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지정 조건 부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 (안 제32조)			■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의무화 ■ 법인별 채용규모, 전담인력의 자격 등 채용에 관한 사항 부령 위임
위탁 수수료율 최고한도 조정 (안 제32조)		■ 위탁수수료율의 법적 상한을 부령에서 정함	■ 도매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탁수수료율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지원금 납부 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위탁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부진 도매시장법인등의 필수적 지정 취소 (안 제82조)		■ 성과부진 법인 지정취소 가능 (개설자 재량)	■ 성과 부진법인 지정취소 의무화